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훈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15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5일

발 의 자: 김경훈, 강석주, 고광민,
곽향기, 김동욱, 김영철,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
김혜지, 남궁역, 민병주,
박 석, 윤기섭, 윤영희,
이봉준, 이상욱, 이영실,
이원형, 이희원, 장태용,
채수지, 최진혁, 허 훈,
황철규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지원 및 안전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, 수소 충전 업무의 일원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 (안 제7조의2)
- 나. 충전 시설의 안전 관리 등을 신설함 (안 제7조의7)
- 다.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(안 제11조)
- 라.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 내용 중 충전시설 안전관리 및 인증에 관한 업무를 신설함 (안 제11조2항)
- 마.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 내용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있어 홍보 및 교육 관련 업무를 신설함 (안 제11조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3호, 제7호, 제8호,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6호, 제3호, 제7호,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.

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제7조의3부터 제7조의6까지로 하고, 제7조의2 및 제7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수소연료공급시설 확대를 위하여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,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 제공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·운영의 타당성·합리성·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에 대한 정비 등을 추진할

수 있다.

제7조의7(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등)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 보장을 위한 운영기준 및 안전관리규정의 수립·배포
2. 충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 및 부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안전검사 지침, 규정 등의 제공
3. 충전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안전 교육 실시

② 충전시설의 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수립·배포된 운영기준 및 안전관리규정을 충족하거나 안전검사 지침 등에 따른 안전검사를 완료하였거나 안전 교육 이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충전시설에 대하여 관련된 인증·홍보를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인증·홍보의 절차,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업무 일부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”을 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에너지공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제7조”를 “제7조, 제7조의2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7조의7에 따른 충전시설 안전관리 및 인증에 관한 업무

4. 제10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 관련 업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·5. (생략)</p> <p>7. (생략)</p> <p>8.·9. (생략)</p> <p>10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7.·8. (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)</p> <p>9.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 <p><u>제7조의2(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수소연료공급시설 확대를 위하여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,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</u></p>

제7조의2 ~ 제7조의5 (생략)

<신설>

제공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·운영의 타당성·합리성·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에 대한 정비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7조의3 ~ 제7조의6 (현행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와 같음)

제7조의7(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등)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 보장을 위한 운영기준 및 안전관리규정의 수립·배포

2. 충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 및 부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안전검사 지침, 규정 등의 제공

3. 충전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안전 교육 실시

② 충전시설의 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수립·배

제11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서울에너지공사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5조, 제6조, 제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업무

<신 설>

2. (생략)

<신 설>

3. (생략)

포된 운영기준 및 안전관리규정을 충족하거나 안전검사 지침 등에 따른 안전검사를 완료하였거나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충전시설에 대하여 관련된 인증·홍보를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인증·홍보의 절차,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업무의 위탁) -----
-----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에너지공사-----

--.

1. ----- 제7조, 제7조의 2-----

2. 제7조의7에 따른 충전시설 안전관리 및 인증에 관한 업무

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4. 제10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 관련 업무

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2 (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지원)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(기후환경본부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4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7조의2	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(붙임1)	23,620,752

※자료: 2024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희선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추계분석관 김지혜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[붙임 1] 2024년 서울시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- 사업대상 : 상암, 양재,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등
- 사업기간 : 2024. 1월 ~ 12월
- 주요내용
 - 상암, 양재,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운영 및 시설관리(대행기관 : 서울에너지공사)
 - 진관2공영, 송파공영 수소버스충전소 액화수소로 전환(버스정책과 발주)
 - 은평공영 액화수소 버스충전소 신규구축(버스정책과 발주)
- 사업수행주체 : 서울시(대행기관 : 서울에너지공사)